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차료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 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상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위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4조, 제6조)
- 나. 입장제한 삭제(안 제9조)
- 다. 행위제한 삭제(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제4조의3제2호 중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을 “야영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사절”을 “외교사절단”으로, “수행자”를 “수행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6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제3항제17호(중전의 제13호) 중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을 “사람(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 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 ----- ----- ----- -----.
제4조의2(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 · 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 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 · 산 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 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 려는 날의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제4조의2(시설의 예약) ① ----- ----- ----- ----- ----- ----- 14일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시설 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 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야영장 및 오토캠프장</u> : 그날	2. <u>야영장</u> -----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3.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6호 -----

-----.

1. ----- 수행원

2. 외교사절단 ----- 수행원

3. -----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신 설>

10. (생 략)

11.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자

12. (생 략)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

----- 사람(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삭 제>

5. 야생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
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6.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행상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
는 행위

6.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
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7. 산불예방기간(11월 ~ 이듬해
5월까지)에 야외에서 하는 취
사행위

<삭 제>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

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소관 실·과		산 립 과
입 안 자	담 당 관	이 한 석
	담 당	윤 명 희
	담 당 자	박 지 혜 (480-5883)